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철도차량 조달 시 기술력 등을 고려한 낙찰기준 마련 〉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2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2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철도차량 조달 시 기술력 등을 고려한 낙찰기준 마련 (안 제13조의3 신설) ..	2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22197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3.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계약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나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 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은 철도차량 조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철도차량 조달계약은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철도차량 조달의 경우 납기준수 능력, 품질관리 역량,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이 낙찰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아 납품 지연이나 품질 하자를 반복한 업체가 재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기술 등을 적용한 철도차량의 적극적인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철도차량 조달 시 기술력 등을 고려한 낙찰기준 마련 (안 제13조의3 신설)

개정안은 철도 분야 공공기관이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철도차량의 기술적 특성·안전성·혁신성 등 가격 외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가격·기술능력·품질관리능력·납기이행능력·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철도차량의 품질 확보와 철도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3(철도차량의 조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이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의 기술적 특성, 안전성, 혁신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현행	개정안
	<u>는 가격 외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할 것</u> 2. <u>가격, 기술능력, 품질관리능력, 납기이행능력,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것</u> 3. <u>그 밖에 철도차량의 품질 확보와 철도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한국철도공사¹⁾의 철도차량 조달은 물품 구매의 일종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하위법령에 따라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우선,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²⁾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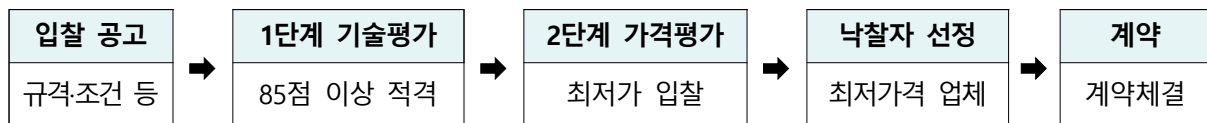
1) 국토교통부는 지방공기업의 도시철도차량 조달에 대하여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으로, 이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

른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한 종류로서, 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기술(규격)에 대해 먼저 평가한 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술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임.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철도차량의 경우 기술평가 단계에서 기술능력, 설계 및 RAMS³⁾, 사업수행능력,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능력,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고 납품지연 실적도 감점하고 있으나⁴⁾,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의 제도 특성상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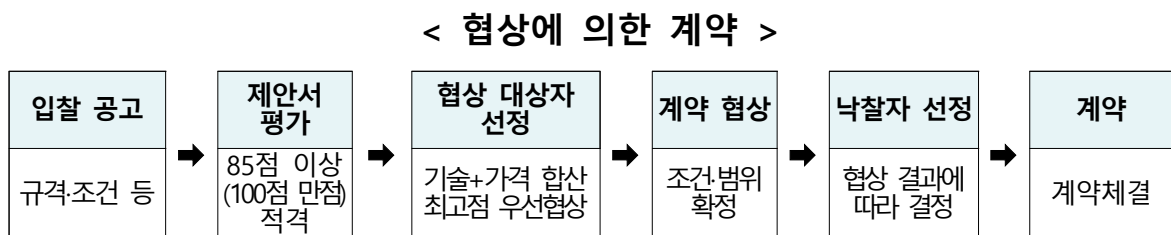
-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3)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 철도시스템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을 의미함.
- 4) 2025년 한국철도공사의 신규 전동차량 156칸 구매계약의 기술평가 배점(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구분 분야	계 (Ⅰ+Ⅱ)	Ⅰ.비계량 부문(75점)				Ⅱ.계량 부문(25점)	
		1. 규격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1.경영상태	2.납품실적
항목		규격·기술 능력	설계 능력 및 RAMS	사업 수행 능력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신용 평가 등급	- 동등이상 물품 - 유사물품
배점	100	20	19	18	18	10	15

* 동 기술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기술적격자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업체 간 기술평가 점수의 차이가 최종 낙찰자 결정에 반영되지 않음.

다음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⁵⁾에 따라 전문성·기술성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계약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후 계약조건·가격협상을 시행하여 협상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임.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현황을 보면, 총 17건(1,375량)의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적용된 건은 2건(95량)에 그쳐, 기술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기술수준을 충족한 업체 중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이 주로 활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차량 조달계약 현황 >

연번	계약일	계약명	입찰방식	수량 (량)	낙찰금액 (백만원)	납품기한	비고
1	2021-05-21	광역철도 전동차 18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8	69,928	2024-03-31	
2	2021-12-08	광역철도 전동차 16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6	62,170	2026-02-17	
3	2021-12-17	전동차 74량	협상에의한계약	74	133,820	2024-10-31	
4	2021-12-24	동력분산식 준고속열차(EMU-260)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84	386,400	2026-03-31	
5	2022-12-29	디젤전기기관차 15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5	144,300	2026-06-30	
6	2023-02-24	전동차24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24	50,373	2025-04-30	
7	2023-03-27	고속차량(EMU-320)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36	710,000	2028-03-27	
8	2023-08-10	디젤전기기관차 15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5	149,800	2027-06-30	
9	2024-04-26	간선형전기동차 (EMU-150) 116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16	242,900	2028-01-31	계약 해지
10	2024-07-26	고속차량(EMU-260)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78	389,700	2028-10-25	
11	2024-12-26	전동차 108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08	196,385	2028-05-25	
12	2024-12-26	디젤기관차 3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3	37,700	2028-07-25	
13	2024-12-26	화차 49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49	6,428	2026-12-28	
14	2025-11-28	디젤전기기관차 14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4	167,620	2029-10-29	
15	2025-11-28	컨테이너 화차 448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448	58,117	2028-06-15	
16	2025-12-19	전동차 156량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156	285,028	2029-05-21	
17	2025-12-22	숙박형 관광열차 21량	협상에의한계약	21	43,307	2029-04-23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기술평가가 일정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업체 간 기술력과 이행역량의 실질적인 차이를 변별하기 어렵고, 기술평가 통과 이후에는 가격이 낙찰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⁶⁾, 최근 철도차

6)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2481호): 철도차량 조달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026.3.15.

량 납품계약에서 최대 3년 가까이 납품을 지연한 업체와 다른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례도 있어, 납품지연 실적 등 가격 외 요소를 낙찰자 선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⁷⁾

철도차량은 장기간 운행되는 대규모·고가의 물품으로서 품질이 철도 안전 및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력·품질관리 능력·납기이행능력 및 과거 계약이행성과 등을 낙찰자 선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⁸⁾.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계약제도의 통일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철도차량의 조달이 다른 대규모·고기술품 물품의 조달과 비교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별도의 계약방식과 낙찰자 선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공공계약의 계약방식과 낙찰자 결정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조달 역시 이러한 공공계약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7) 입찰자 기술평가 시 타 계약이행 지연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기준점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이 가능함. 2024년 EMU-150 116량 조달과정에서 A업체, 2025년 전동차 156량 조달과정에서 B업체가 각각 입찰시 **납품지연 감점이 적용되었으나 기술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A업체는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바 있음.

8) 국회입법조사처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기술수준·품질관리체계·납기관리능력·과거 계약이행성과 등을 가격요소와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음.(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2481호): 철도차량 조달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026.3.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⁹⁾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계약특례를 두는 것이 법체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님.

다만, 이러한 계약특례는 공공계약 법체계의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철도차량 조달에 별도의 계약특례를 신설하기에 앞서 현행 제도 내에서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성·기술성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고, 신기술 적용 등으로 계약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¹⁰⁾을 적용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방식¹¹⁾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¹²⁾는 기존 계약방식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의 종류·목적물 또는 대상사업의 혁신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범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따라서 우선 철도차량의 특성에 따라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제도로 기술력·품질·납기이행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적합한 계약방식을 시범특례로 운영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개정안의 위임입법 체계와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

개정안은 가격 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계약방식과 가격·기술능력·품질관리능력·납기이행능력·과거 계약이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낙찰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계약의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도차량 조달에 별도의 계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계약방식이나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공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철도차량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¹³⁾이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통공사¹⁴⁾가 도시철도 차량 등을 도입·교체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⁵⁾.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관련 공공기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주) 에스알
14)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임.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제2조(적용범위)를 통해 국가 및 한국철도공사 등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를 기본적인 적용범위로 하나, 제2장(개정안 제13조의3 포함)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어 도시철도도 적용범위에 포함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철도차량 조달에 관한 별도의 계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계약방식 및 낙찰자 선정기준의 위임입법의 형식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철도 분야 지방공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차량 계약은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국가계약법상 시범특례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평가를 통해 법체계 일관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국가계약법 개정추진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582

-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참고

공공조달 입찰제도 현황

- (입찰제도) 공공조달 경쟁입찰은 계약 목적·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여 가격·기술능력 등 평가
- (철도차량) 철도차량 구매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①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2단계) 방식 또는 ②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운영 중

< 주요 낙찰자 결정방법 비교 >

구분	평가(심사) 방법	낙찰 방법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물품·용역)	- 비계량평가 : 사업제안, 기술능력, 사업수행능력, 사후관리 등 평가(70~80점) - 계량평가 : 경영상태, 납품실적 평가(20~30점)	* <u>기술평가 적격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u>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용역)	- 기술능력 : 기술능력, 사업수행능력, 사후관리,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평가(70~90점) * 비계량평가 + 계량평가(수행실적, 경영상태) - 가격 : 가격점수(10~30점)	* <u>기술능력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u> * 단, 기술점수에서 85% 이상 득점해야 함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용역) ※ 철도차량 구매에 적용 불가 ¹⁶⁾	- 수행능력 : 전문성, 역량(40~50점) - 가격 : 가격점수, 가격 적정성(50~60점) - 사회적 책임 : 고용·건설안전·공동도급 등(가감점)	* <u>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u>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 5.(생략)